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정순옥 의원 등 5명
- 발의일자: 2025. 5. 27.(화)
- 회부일자: 2025. 5. 27.(화)
- 검토기간: 2025. 6. 5.(목) ~ 6. 12.(목)

## 2.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일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위임한 조직·구성·운영 기준을 별도 조례로 체계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법령상 위임 근거 명시(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제2조~제3조)
- 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 라.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회의 운영, 제척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9조)
- 마. 관계자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제10조)

##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심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 부칙 안 제1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중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상기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건수)

연도별	개최횟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2020	4	4 ( - )	16
2021	12	7 ( 5 )	47
2022	12	1 ( 11 )	43
2023	11	- ( 11 )	43
2024	10	- ( 10 )	43
2025	5	1 ( 4 )	16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2024. 2. 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